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65

발의연월일: 2025. 4. 18.

발 의 자: 송옥주・이수진・한정애

홍기원 • 윤준병 • 전종덕

한민수 · 김남희 · 박 정

주철현 • 박해철 • 황명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지목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현행법은 공항이나 비행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절차적으로 공항 또는 비행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 조류충돌 대책을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을 위한계획수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 위험성이 주요사항으로 검토되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제8호 신설 등).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8 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항 또는 비행장으로 개발하려는 후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8. 조류충돌 방지계획.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조제6항"을 "제4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제4조제6항"을 "제4조제7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6항"을 "제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6항"을 "제4조제7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6항"을 "제4조제7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6항"을 "제4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항
	또는 비행장으로 개발하려는
	후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
	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
	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u>4</u>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조류충돌 방지계획.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
	성 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u>8.</u> (생 략)	<u>9.</u> (현행 제8호와 같음)
<u>④</u> ~ <u>⑦</u> (생 략)	<u>⑤</u> ~ <u>⑧</u> (현행 제4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u>제4조제6항</u> 에 따라 공항·	① <u>제4조제7항</u>
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또는 제7조제6	
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 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 나 양도할 수 없다.

② ~ ⑤ (생 략)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4조 7 제6항에 따라 공항 · 비행장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 역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실 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 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 관,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 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② ~ ⑥ (현행과 같음)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① 누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①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⑤ (연행과 짙름)덺10조(행위 등의 제한) (
제7항	
② ~ ⑥ (현행과 같음)	

구든지 <u>제4조제6항</u>에 따른 기 본계획의 고시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 물·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설치·재배하거 나 방치할 수 있다.

- 1. ~ 5. (생략)
- ②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존치장애물로 고시되지 아니한장애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 2. (생략)
- ③ ④ (생 략)

제34조의2(장애물의 제거 요구 저 및 손실보상 등) ① 국토교통 부장관 및 사업시행자등은 <u>제4</u> <u>조제6항</u>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 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장애물 외의 장애물에 대하여 장

<u>제4조제7항</u>	
,	
<u>.</u>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7항	
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세34조의2(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①	
	제4
조제7항	

애물소유자등(장애물의 소유권 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 한이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⑩ (생 략)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장애물 제한표 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 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 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 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6 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제 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변경 고시를 한 후

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경우에

는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표시

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①
제4조제
<u>7</u> 항
② ~ ③ (현행과 같음)